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당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7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6.
3. 회 부 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됨.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됨.

다만,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위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정당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8조제6항 등)

개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¹⁾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대표발의, 2024. 9. 6., 의안번호 제3777호)이 발의됨에 따라 해당 공무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정당법」 2)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안) 주요 내용>

내 용	현행 「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제22조제1항 제1호)	국가·지방공무원(단, 정무직 공무원 등은 제외) 등 단,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 제외	국가·지방공무원(단, 정무직 공무원 등은 제외) 등 단,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제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	좌동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좌동
	「공직선거법」 3)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좌동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제22조제2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좌동

2)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3)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현행	개정안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 ⑤ (생략) <u><신설></u>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u> <u>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u> <u>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u> <u>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u> <u>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해당</u> <u>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u> <u>다.</u>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3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 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5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u>누설한 자</u>	2. ----- ----- ----- ----- <u>누설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u> <u>위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u>

한다.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効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3. ~ 7.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2. (생략) 3. <u>제8조(후원회의 회원)제1항의</u>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4. ~ 9. (생략) ④ (생략)	<u>있는 공무원 중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자</u> 3. ~ 7.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8조(후원회의 회원)제1항 또는 같은 조 제6항</u>----- ----- ----- 4. ~ 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한편,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

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가입을 금지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후원회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가입을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정치자금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개정안 제8조 제6항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수반하는 의무 규정인데 후원회의 ‘관할’을 상정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